

# I. 序論

傳統的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停態的인 農耕社會에서는 私人間의 다툼을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生産物의 瑕疵 및 缺陷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의 감내로써 마무리됐고 그러한 爭訟을 다루는 배상책임법리는 미분화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工業化, 産業化, 都市化에 따라 生産物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나 이용자 등 제3자의 신체장해(bodily injury), 재산상의 피해(property damages)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生産物賠償責任<sup>1)</sup>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樣態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발생의 普遍化, 피해의 廣範圍化, 책임의 不明確化, 입장의 非對等化 등의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피해로 전환되었고,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발생시의 구제와 관련한 사후처리 문제가 중요한 消費者保護施策으로 등장함과 아울러 생산물배상책임의 중요성도 그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民法의 전통적인 過失責任理論으로는 고도의 과학기술이나 제조과정 및 유통구조의 복잡화로 야기되는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법률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私法理論으로서 생산물배상책임의 법리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리의 발달과 관례의 축적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중국 등이 이미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特別法이

---

1)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제2차 생산제품인 공업제품에 한정된 “제조물책임 또는 제조자책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농업생산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산제품을 고려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사업방법서상 “生産物賠償責任”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현행 民法에 의하여 債務不履行責任, 瑕疵擔保責任, 不法行爲責任 등으로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契約當事者關係(privacy of contract)를 전제로 하는 계약책임 혹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책임법리는 다양한 법적기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입법방안이 제기되어 온 터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89년 11월 생산물배상책임의 立法施案作成果 1994년 6월 27일 '生産物責任의 立法方向' 주제하의 세미나개최를 통하여 生産物賠償責任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1996년 4월부터 위해제품에 대한 缺陷是正措置를 전 공산품(식품은 10월 시행예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하였으며, 또 생산물배상책임법을 따르던 1998년<sup>2)</sup>에 시행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생산물책임법의 도입은 위해방지를 위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 및 사고예방대책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남발로 인한 인적·물적 소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결합의 판정기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생산물배상책임법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제조업계의 우려도 있지만 국제화, 개방화라는 명제앞에서 생산물책임의 입법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자료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법과 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대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의의,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된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의 법리체계와 소송방어대책, 생산물사고와 관련된 보험제도 등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미국, EC국가,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법리체계와 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보험제도에 미치는

---

2) 『조선일보』, 1996. 9. 5

영향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법리체계와 입법논의의 내용 및 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生産物賠償責任法の立法化가 保險制度에 미치는 영향과 國內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